

글로벌융합정보원 규정

2018.01.0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정보원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부속 글로벌융합정보원(IGSE Global Convergence Information Source, 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정보원은 새로운 시대상에 어울리는 창조적 융합적 안목을 갖춘 글로벌리더를 양성하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세계화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정보원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안에 둔다.

제4조(사업) 정보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글로벌융합전략연구사업
2. 글로벌리더양성과정
3. 최고위과정

제2장 조직 및 역할

제5조(원장) ① 정보원에는 원장을 두며 외부 인사 또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매년 평가를 통하여 연임 또는 신규 원장을 임명한다.

제6조(팀장) ① 정보원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정보원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원장을 보좌한다.

② 팀장은 교육원 직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제7조(교직원)** ① 정보원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약간 명의 교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원 및 직원의 채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교원 및 직원의 연봉책정 기준은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8조(강사)** ① 정보원의 각 과정별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강사관리, 학생지도, 강의 등을 담당하기 위한 코디네이터를 둘 수 있다.
② 각 과정별로 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를 둘 수 있다.
③ 시간강의료 지급 기준은 기본적으로 IGSE교육원 규정을 따르며 예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기안에 따른다.

제3장 운영위원회

- 제9조(구성)** ①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업무담당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회계

- 제11조(회계연도)** 정보원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2조(예산 및 결산)** ① 원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예산 편성 시 해당연도의 사업결과 보고서 및 예산집행 상황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 제13조(수입원)** 정보원 운영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수강료
2. 기타 수입

제14조(회계집행) 정보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교 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15조(세부사항) 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